

<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

취지와 타당성 :

기계설비공사에서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계분야 전문기술인력 필요성 증대,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능력을 현실화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며 기계분야의 산업기사입니다. 품질확보, 안전관리, 정밀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분야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계설비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으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계분야의 기술인만이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 등을 하여 공중별로 중대사고와 일반사고에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사중 발생하는 중대사고에서도 기계설비공사의 시공방법(용접,절단등) 시공기술(고압,유해가스 발생등)을 이해하여 유해 및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하여 조치할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전문분야 기술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전문기술이어야 건설관련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품질 및 안전확보와 증가하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대폭 감축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정밀시공을 위한 기술력 강화와 기계설비 분야의 품질분쟁을 최소화 하고 착공전확인, 사용전검사, 유지관리, 성능점검 이라는 전 생애주기 별 성능 적합 검사를 받으며 관리하고 있어 품질시공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가 적극 필요합니다.

시공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 있기 때문에 시공시에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업 기술능력(인력) 기술자 1명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기술능력 육성을 현실화 시켜 사업자의 경영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기계설비기술인을 배치하여 도면, 시방서, 내역서등 기술기준을 이해하고 검토 할 수 있는 기계분야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부실업체 시장진입의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에 따라 문제발생이나 영업활동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기계건설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전문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기술인력확보를 등록기준에 반영하여 안전사고 규제강화에 따라 재해사고등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업의 기술능력이 적극 필요하며 국민편익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삶의 편익에 부합할수 있도록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